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87보 15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권 인 숙(權 仁 淑)

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 김상철, 박원순, 이상수, 조영태,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7.3.10.자, 87초30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양형(量刑)에 있어서의 참작할 사유는 반드시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하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형사소송규칙 제135조 단서에

의하면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거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을
을 이유로 한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한것은 양형에 관한 증거의 결정, 조사를 법관의 재량에

가
질과 아울러 불필요한 증거신청으로 인하여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도 막고자 함에 있다하겠다.

원심결정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고 그에관한 보강증거도 충분한터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도 나

타나 있어서 본안 재판부 법관들이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신청

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

려가 있다고 할수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소명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